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기존주택 처분 기한의 연장 (안 제2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위축되어 기존주택 매매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‘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’(10.27)

2.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규정 (안 제35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‘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’에 따른 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 미혼 청년 특별공급 근거 규정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무주택 미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‘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’(10.26)

3.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 확대 (안 제37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이며, 이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 토지 협의양도인 범위 확대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공공주택건설사업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원활한 주택공급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‘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’(8.16)

4. 처분조건 연장에 대한 특례 (안 부칙 제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을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할 경우, 기존 수분양자들은 규제개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제도개선 계획 발표 시점('22.10.27)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게도 소급 적용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처분조건 기한 연장 소급 적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기반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'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'(10.27)

5.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명확화 (안 별표 제1 나목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산정시,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되,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운영하여왔으나, 명확한 제도 운영을 위해 명시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산정시,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되,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를 포함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기준을 명확화하여 청약자 등 혼란을 사전에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6. 별점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 기준 현행화 (안 별표 4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31156호, '20.11.10.)으로 별점산정방식이 변경('23.1.1. 시행 예정)됨에 따라 별점별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 현행화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별점별 입주자 모집시기 기준을 누계평균별점에서 합산별점으로 현행화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 현행화하여 사업주체의 혼란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 31156호, '20.11.10.)